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73138 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구합63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A 외 1필지 지상 B 72개동에 관한 재산세 등 9,106,244원에 대한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을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재산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단서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신 후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 결정을 하였으나, 여기에는 이 사건 재산세 등 가운데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제외되었으므로, 위 환급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회신의 위법성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1)]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은 단순 민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신에 의한 감면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중 이 사건 환급금 환급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으로 구하는 부분을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개의 청구로 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감면신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이 감면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감면신청 사유는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후 재산세 감면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의 내진성능확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2016. 6. 21. 내진성능확인을 받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6. 28. 피고에게 제출한 감면신청서(을2호증)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경정청구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4. 14. 이 사건 환급금의 환급을 결정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신 중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회신 중 이 사건 환급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 사건 회신 중 이 사건 환급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잔여처분'이라 한다).

5. 이 사건 잔여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내진성능확인에 의한 지방세 경감은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도 같다), 이 사건 재산세 등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과세되고(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대상으로 과세되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위 내진성능확인에 의한 지방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산세 등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감면된 재산세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부분을 이 사건 환급금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잔여처분에는 원고의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환급 결정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내세웠으므로 이 사건 잔여처분은 이 사건 회신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잔여처분은 이 사건 회신에서 이 사건 환급금으로 환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잔여처분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그러한 처분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추가·변경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달리 제20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대상에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감경 대상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되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87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은 2015. 12. 31.까지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에 관하여 2016. 6. 21.에야 내진성능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단독주택단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내진성능확인에 의한 지방세 경감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은 위 개정법률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적 적용례로서 위 개정법률을 그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할 뿐 내진성능확인에 의한 지방세 경감에 관하여 개별적 적용례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2015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사건 주택단지는 위 개정법률 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잔여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 중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 전체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①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 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63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3-09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 원 초과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끝.